
**2021년 서정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LAB
입주기업 모집**



서정대학교
SEOJEONG UNIVERSITY

2021. 03. 22.

창업지원센터

「서정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LAB 입주기업 모집」

I 추진배경 및 목적

-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게 창업 공간, 네트워크 및 경영, 기술컨설팅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및 서정대학교 취·창업 증대

II 모집일정

- 모집기업 : 2개소(외부 1개소, 서정대학교 졸업자 1개소)
- 입주장소 : 공학관 1층, 창업보육LAB(면적 : 23㎡) 공동사용
- 접수기간 : 2021. 03. 29.(월) ~ 2021. 04. 26.(월)
- 심사방법 : 서류 및 발표심사
- 입주기간 : 2021. 05. 17.(월) ~ (개별협의)
 - ※ 입주신청서는 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류 도착분에 한함.(평가일정은 개별 통보)
 - ※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III 모집대상

- 예비창업자,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
- 새로운 아이템/아이디어, 비전을 보유하고 입주 2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개인 또는 기업
 - 입주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
-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경험이 없는 자
- 창업특화분야 : 4차 산업 분야 우대
 - ※ 신청자격 제한
 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제외업종 영위자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 외)
 - 금융회사의 신용불량거래자, 공해 발생 업종, 기타 본 센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
 -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IV 절차

- 절차 : 접수 전 전화 및 방문 상담 가능, 방문 또는 이메일(pdf)제출
 - 입주신청서(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), 사업계획서, 기타증빙자료 등
- 1차 평가 : 서류심사(운영위원회 평가)
- 2차 평가 : 발표심사(1차 평가 통과자에 한함, 운영위원회 평가)
- 최종 평가에서 선정된 후 입주계약 및 입주(입주보증금 납부)

IV

제출서류

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- 주민등록등본(대표자) 및 신분증 사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(기 창업자만 해당)
-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사업자만 해당)
- 주주명부 1부(법인사업자만 해당)
- 주거래 금융기관발행 금융거래확인서 1부(기 창업자만 해당)
- 기타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 : 최근년도 재무제표, 지식재산권, 각종 인증서 등)

IV

입주조건

- 입주기간 : 최초 1년(연장심사를 통해 1년 단위 재계약)
- 사업자등록 조건 : 입주 직후(창업 시) 본교 창업보육LAB을 주소지로 사업장등록 완료

IV

입주비용

- 입주보증금 : 금1,000,000원(퇴거 시 반환)/미납금 발생 시 상계한 후 반환
- 관리비(월) : 금5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, 물가 상승률 반영 추후 변경 가능)
- 기타 비용 : 사업성공 부담금 2%/1년(서정대학교 발전기금)

* 서정대학교 졸업생 창업자 입주 보증금 및 관리비 최초 1년 유예

IV

입주기업 지원

- 경영, 기술 컨설팅 지원
- 특허 출원/등록 지원
- 마케팅/홍보 지원
- 정부지원사업 연계 지원
- 책상, 의자 등 사무기기 지원
- 학교 부대시설 및 행정 지원

IV

기타

- 입주기업 심사 시 적합한 기업(예비창업자)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제반 사항은 “서정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(LAB) 운영계획”에 따름

IV

문의처 (서정대학교 학생복지처 창업지원센터)

- 담당자 : 하은지
- 전 화 : 031-860-5099
- 팩 스 : 031-860-5077
- E-mail : wldmsgk12@seojeong.ac.kr
- 주소 : (11429)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서정대학교 공학관 5층 창업지원센터

서정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LAB 운영계획

□ 목적

서정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의 20에 따라 창업보육(이하 “창업보육LAB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 및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조직 및 운영

- 창업보육LAB의 운영, 입주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.
-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매니저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학생복지처 직원 또는 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창업보육LAB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

□ 입주자 선정 및 관리

- 창업보육LAB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 1. 새로운 아이템/아이디어, 기술 보유자로 창업 준비 중인 자(예비창업자)
 2.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되어있는 자(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)
 3. 대학 및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경험이 없는 자
 4. 창업특화분야 : 4차 산업 분야 우대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.
 1.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제외업종 영위자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 외)
 2. 사업 업종이 폐수, 소음 및 진동 등을 유발하는 기업
 3. 금융회사의 신용불량거래자, 공해 발생 업종, 기타 본 센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
 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□ 입주자 선정기준

- 입주자의 선정은 입주심사표(별지 제3호 서식)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- 센터장은 상기 위원회 심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신청자를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.
 1. 센터가 특화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분야 신청자
 2.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
 3.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자
 4. 창업경진대회 선정자, 창업동아리 등 대학생 예비창업자, 서정대학교 졸업생 창업자
 5.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입주신청 절차

- 창업보육LAB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기간 내에 입주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센터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수 마감 15일 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(재학생 및 졸업생 창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)

입주기간 및 입주기간 연장

- 입주기간 : 최초 1년(연장심사를 통해 1년 단위 재계약)
- 입주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희망원(별지 제5호 서식)을 제출하여야 하며, 센터는 연장심사를 통해 1년 단위 재계약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입주승인 취소

- 입주승인을 받은자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 1. 입주계약을 정해진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
 2. 입주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
 3.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
 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

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

-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입주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입주예정자는 지정된 입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.
-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때에는 입주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(입주일은 최초 지정된 입주일로부터 30일 이상 연기할 수 없음)

입주보증금 및 관리비

-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, 관리비 및 시설·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.
- 입주자는 입주일 이전까지 입주보증금을 센터에 납입하여야 하며, 센터는 입주자가 퇴거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 시 정한다.

사업자 등록

- 입주자는 입주 후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입주자 중 사업 아이디어 기획 및 기술개발 단계인 예비 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.

□ 입주자 지원 등

- 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케팅, 지적재산권 및 세부기술 분야 등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.
-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영 및 기술지도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경영·기술지도 등을 위하여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본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□ 센터는 퇴거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,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,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시설물 사용

- 입주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- 입주자는 학생복지처 회의실 등 교내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센터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(센터는 사용자에게 소모품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음)

□ 구조물의 설치 및 변경

- 입주자는 창업보육LAB 내부·외부의 시설물에 칸막이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(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)
- 구조물의 설치 또는 변경자는 퇴거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, 그 비용은 구조물의 설치자 또는 변경자가 부담한다.

□ 손해배상

- 입주자 및 고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보육LAB 및 학교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학생복지처에 배상하여야 한다.

□ 입주자 금지사항

- 입주자는 본 대학교 또는 창업보육LAB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 1. 숙박행위(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)
 2.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,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,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지하는 행위
 3.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
 4.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, 제조 및 판매행위
 5. 임의로 냉·난방용 기기를 반입하거나 센터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
 6. 본 대학교 및 창업보육LAB에 설치한 구조물,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
 7. 알코올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

주는 모든 행위(주류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련 상품을 연구·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함)

8. 그 밖에 창업보육LAB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

물품 반출입

- 입주자는 창업보육LAB 내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,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1. 인화물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창업보육LAB 내로 반입할 수 없다.(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 시설을 갖추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야 함)
 2. 소음 및 악취를 발생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을 해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.(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함)
 3. 센터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방재관리

- 입주자는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칙 및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다음의 상황을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.
 1. 본 대학교내 어떤 장소라도 소각행위는 할 수 없다.
 2.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센터와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3. 입주자는 센터 또는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.
 4. 입주자는 센터가 방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5. 소화기는 입주자가 구비한다.

신고의무

- 입주자가 7일 이상 창업보육LAB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.(이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입주자 책임으로 함)

보험가입

- 입주자는 센터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창업보육LAB 출입

- 센터는 보안, 위생, 방범, 방화 및 구호 등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창업보육LAB 내에 출입할 수 있다.

입주자의 퇴거

- 입주계약이 만료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퇴거하는 것으로 본다.
-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.
 1.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
2. 관리비 및 시설·장비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액이 입주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
 3. 소음 및 악취를 과다 발생하거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타 입주자의 사업활동이나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
 4.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, 파산, 화의개시,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
 5.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
 6. 창업보육LAB을 사전 신고 없이 2개월 이상 비운 경우
 7. 그 밖의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퇴거희망원(별지 제4호 서식)을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, 센터는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본다.

□ 입주보증금 정산

-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관리비, 시설·장비사용료 및 그 밖의 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등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.

□ 재정 및 회계

- 센터의 회계연도 및 세입·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서정대학교의 회계처리 규칙에 따른다.